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90 제출연월일: 2020. 7. 2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4호 중 "취소"를 "취소(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	제30조(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
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격사유)
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	
질 영업을 할 수 없다. 다만, 제	
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	
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	
영업의 경우에 한하여 유해화학	
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<u>취소</u>	4 취소
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	(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
한 자	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
	외한다)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